

-새생명실버홈 운영 규정 준거로 입소자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제 12 장 입소자

제1절 입소자

제81조(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9인(2019.7.1.부터 해당)으로 한다. 단, 입소자의 장기 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할 경우, 외박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 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2조(입소대상)

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2등급 시설 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2.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3~5등급 중 시설 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3. 상기 1, 2항에 해당하시되 전염성질환이 없는 어르신

제83조(모집 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시설 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 및 내원 상담, 기존 입소자의 지인 소개, 기타 홍보지 등 광고 방법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2절 입소 계약

제84조(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단,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상호협의를 의하여 입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입소 어르신의 요양 등급 변경, 보험공단의 수가 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계약을 실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나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5조(계약목적)

급여 제공 계약을 하는 목적은 입소 후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급여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입소 어르신이나 보호자와 시설 상호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입소 어르신께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제86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입소 생활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아래(표)와 같은 비용체계를 가지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시설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에는 아래의 표를 변경한다.
2. 입소생활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성된다.
3.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실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표1:(월 31일인 경우)

단위 : 원

등급	1일수가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합계				
	31일 수가	일반 (20%)	12% 적용	8% 적용	식재료 간식	침실료 (1,2인실)	계	일반	12% 적용	8% 적용		
1등급	72,840	451,610	274,960	180,640	207,700	1인실 279,000	486,700	938,310	761,660	667,340		
										903,650	736,870	653,480
2등급	67,250	416,950	250,170	166,780		2인실 155,000	362,700	871,100	717,340	640,460		
										814,310	637,660	543,340
3등급	62,000	384,400	230,640	153,760						779,650	612,870	529,480
										747,100	593,340	516,460

* 비급여항목 - 식재료 : 5,700원(1일) 간식 : 1,000원(1일)

침실료 : 5,000원(2인 1일) 9,000원(1인 1일)

* 식비 : 간식포함 1일당 6,700원 [비급여계- 1인실 15,700원, 2인실 11,700원]

제8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입소 어르신인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 ② 입소 어르신의 신변 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는 권리
 - ③ 급여제공 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 어르신의 제반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입소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납부 의무
 - ② 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③ 입소 어르신의 건강 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 ④ 입소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 사항

에 대한 책임 의무

⑤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제8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2. 입소 어르신이 건강 진단 결과 전염성질환이 발병하거나 배회 또는 폭력성 행동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다른 입소 어르신에게 심한 지장을 줄 때
3. 1회 이상 월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 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 어르신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6.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8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급여제공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 방법과 절차는 입소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3절 급여 제공

제90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입소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다만,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개별적인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 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상담서비스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자립 일상생활이 어려운 입소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
3. 의료 및 간호 서비스: 건강검진, 질병예방, 질병간호 및 처치, 병원진료 지원 촉탁의 진료 지원 등
4. 재활서비스: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적(작업)치료, 인지력 강화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의 기능회복 훈련
5. 심리 사회적 기능 증진 서비스: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 사회적 기능회복 지원

6. 정서 지원 서비스: 개인별 정서 지원, 생신 찬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 정서 프로그램 실시

7. 영양 관리 서비스: 입소 어르신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여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지원

제91조(특별한 보호 필요 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산정)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인지도 저하 및 특별처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입소 어르신 상태에 따른 동의서를 받은 후 보호를 위한 신체적 제한과 같은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받지 않는다.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 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제재,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제재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활동에 관한 특별한 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 관찰과 집중 의료 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 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별도의 특별침실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

제9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촉탁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협약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 ② 의사의 건강 상태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③ 협약기관의 의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협약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진료 시 제출하도록 하고 사본은 시설에서 보관한다.
- ②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나. 병원 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입소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진료의뢰기록지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병원 외래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병원 외래나 의원의 방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 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입소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4. 퇴소 조치에 대한 사항

병원 입원 후 어르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경우 보호자와 상담하여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면 시설은 연계(퇴소)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주고 사본은 보관하도록 한다.

제4절 시설물 사용

제93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 1. 모든 시설물은 입소 어르신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이나 위험표지 등을 부착한다.
- 2. 시설의 직원은 모든 시설물 사용 시 안전 지침을 숙지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 3. 시설물 점검에 대한 업무를 맡은 직원은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 4. 의료 전문기기는 직원 중 의료인이 취급하도록 하며, 소화 관련 시설물 및 용품은 담당 업무를 맡은 직원이 취급하도록 한다.
- 5. 입소 어르신 및 직원이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에는 이

의 없이 변상한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5절 책임

제9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1. 시설은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

- ① 직원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며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 ① 입소 어르신이 자연 사망하였을 때
- ② 입소 어르신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입소 어르신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④ 입소 어르신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하였을 때

3. 위에서 언급되지 않는 배상의 의무, 면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4. 시설에서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일반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